



제433회국회(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학교폭력으로 형이 확정되거나 퇴학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교사자격 취득 제한 〉

■ 김대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694호)

2026. 4.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학교폭력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교사 자격 취득 제한	2
2. 학교폭력으로 퇴학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교사 자격 취득 제한	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대식의원 등 12인
2. 발 의 일 : 2026. 2. 10.
3. 회 부 일 : 2026. 2.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사의 자격은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으로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현행법은 미성년자에게 성폭력범죄 등의 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등에 대해서는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폭력 가해자가 교사 자격을 취득하여 교사가 되거나 교육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교육 관련 부적격자가 학생을 가르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교사의 자질 문제뿐만 아니라 교육계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일이 될 수 있음.

이에 학교폭력으로 퇴학처분을 받았거나 형을 받은 자는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여 교사 임용뿐만 아니라 교육 관련 분야의 취업 등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교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의 도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4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학교폭력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교사 자격 취득 제한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학교폭력으로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이 확정된 사람(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그 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에 대하여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나. 검토의견

□ 최근 학생 인권 보호와 학교 내 폭력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은 학교폭력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교사 자격 취득을 제한하여 교육계 진입을 사전에 배제함으로써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한편, 학생의 안전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계에 대한 학부모와 사회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음.

다만, 개정안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한 규제에 해당하므로 결격사유의 범위와 제한 정도가 합리적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함)」 제2조제1호1)에서 정의한 학교폭력으로 「형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교사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 행위의 범위가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등 부터 강제적인 심부름, 따돌림까지 매우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행위의 경중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일률적 규제가 될 우려가 있음.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개정안은 결격대상이 되는 형의 종류를 구분하여 규정하지 않고
결격기간도 정하지 않아, 벌금형과 같은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까지 영구적으로 자격 취득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음.²⁾

한편, 개정안은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까지 결격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집행유예 제도는 범죄자의 교화와 사회복귀를 전제로 일정
조건하에 형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³⁾ 선고의 실
효 또는 취소됨 없이 무사히 집행유예 기간을 마친 사람까지 영구히
교사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집행유예 제도의 취지와 상충될 수 있음.

더욱이 학교폭력 행위의 가해자 역시 교육과 선도의 대상인 학생일 가능
성이 높음을 고려할 때, 미성년 시기의 행위에 대하여 현행 「초·중등교육
법」 제21조의2제2호 및 제3호(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자 등)⁴⁾와 동일

2) 「행정기본법」

제16조(결격사유) ① 자격이나 신분 등을 취득 또는 부여할 수 없거나 인가, 허가, 지정, 승인, 영업등록, 신고
수리 등(이하 “인허가”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영업 또는 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결격사
유”라 한다)는 법률로 정한다.

② 결격사유를 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규정의 필요성이 분명할 것
2. 필요한 항목만 최소한으로 규정할 것
3. 대상이 되는 자격, 신분, 영업 또는 사업 등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4. 유사한 다른 제도와 균형을 이룰 것

3) 「형법」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
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4)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
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
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20. 12. 22.]

한 수준으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영구히 교사자격 취득을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변호사 자격 취득 결격사유에 관한 입법례를 보면, 대체로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자격취득을 제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의사 및 변호사 자격취득 결격사유(형사처벌 관련)>

구분	근거	형사처벌 관련 결격사유 내용
의사	「의료법」 제8조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4. <u>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u> 5. <u>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u>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변호사	「변호사법」 제5조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1. <u>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u> 2. <u>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u>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26.3.13.) 내용 정리

따라서 개정안의 경우에도 학교폭력 행위의 중대성 및 형사처벌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격사유가 되는 형의 종류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한정하고, 결격기간을 설정하는 등 규정의 명확성과 비례성을 확보하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최근 입법례에서는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규정의 해석상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우를 구분하여 각각 결격기간을 달리 규정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는 점도 수정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⁵⁾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신설>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8913호, 2022. 6. 10., 일괄개정)」 등

2. 학교폭력으로 퇴학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교사 자격 취득 제한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학교폭력으로 퇴학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신설>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 ----- ----- -----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퇴학처분을 받은 사람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제9호6)에 따른 퇴학처분을 받은 사람을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6)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 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그러나 퇴학처분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교육적 지도와 학교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적·행정적 조치라는 점에서 형벌과 동일한 법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특히 이러한 조치는 형사법 수준의 엄격한 증명 기준이나 절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퇴학처분의 대상이 되는 학생은 대부분 미성년자인 학생 신분이라는 점에서, 해당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와 행위자의 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에도, 단순히 퇴학처분을 받은 사실만으로 영구히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될 우려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헌재 2017. 9. 28. 2016헌바339), 직업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과도하게 광범위한 경우에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음.

더욱이 현행 법체계를 살펴보면, 의사·변호사 등 사회적으로 높은 도덕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직역의 자격취득 결격사유에 있어서도 금고 이상의 형과 일정한 결격기간을 기준으로 자격취득을 제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이 아닌 학교 내 행정적

조치인 퇴학처분을 이유로 교사 자격취득을 영구히 제한하는 것은 제재의 균형 측면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음.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교육부 : 신중검토

- 퇴학 처분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회의 조치에 불과하여 법적 조치로 보기 어렵고, 교육과 선도라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신중검토 필요

○ 대구교육청 : 신중검토

- 범죄 유형, 형의 경중 등을 구분하지 않고 결격사유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및 비례원칙 위반 가능성이 있음.
- 아울러 퇴학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닌 교육적 징계 및 행정적 조치임에도 이를 교원 자격 결격사유와 직접 연계할 경우 제재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어 낙인 효과 및 과도한 기본권 제한의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

○ 경기교육청 : 신중검토

- 퇴학처분은 사법기관의 처분이 아닌 교육기관의 조치임. 이로 인하여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됨

○ 광주교육청 : 신중검토

- 학교폭력 범죄의 유형과 중대성이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 범죄와 중대한 범죄를 구분하고, 그에 따라 임용 제한의 범위와 기간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음
- 학교폭력으로 인한 퇴학 처분은 이미 중대한 징계에 해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다시 교원 자격 취득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이 중 제재에 해당할 우려

문 의 처
02)6788-5192